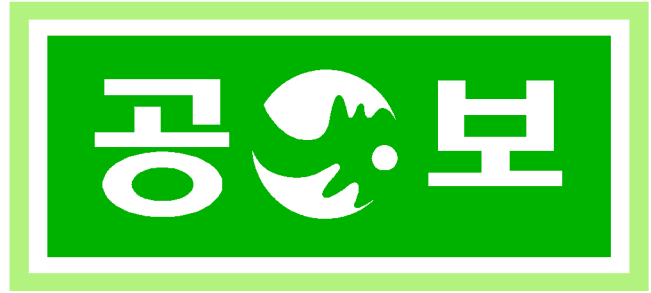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925 호 2015. 1. 9. (금)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5호[2015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공고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6호[2015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7호[2015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] · 4

안 내	○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6 행정7126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-25호

2015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1. 9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(단위 : 명)

계	내 국 인	외 국 인	재외국민
142,101	141,920	135	46

- ※ 내 국 인 :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
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
- ※ 외 국 인 :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
- ※ 재외국민 :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-26호

2015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1. 9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(단위 : 명)

19세 이상 주민총수				연서 주민수
계	내국인	재외국민	외국인	
142,031	141,920	46	65	3,551

※ 내 국 인 :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

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

※ 외 국 인 :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

※ 재외국민 :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

※ 연서주민수 :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/40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-27호

2015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5. 1. 9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구청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	최소 서명인 수	비 고
북 구	141,985	21,298		
구 청 장	농소1동	23,511	1,4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: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	농소2동	24,045	1,420	
	농소3동	29,544	1,420	
	강동동	5,354	804	
	효문동	22,932	1,420	
	송정동	16,302	1,420	
	양정동	10,066	1,420	
	염포동	10,231	1,420	

○ 구의원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	최소 서명인수	비 고		
구 의 원	가선거구	45,167	9,03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•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		
	동 별	농소1동	23,511		452	
		강동동	5,354		452	
		송정동	16,302		452	
	나선거구	53,589	10,718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•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	
	동 별	농소2동	24,045			241
		농소3동	29,544			296
	다선거구	43,229	8,646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•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	
	동 별	효문동	22,932			433
양정동		10,066	433			
염포동		10,231	433			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,

1.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2.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

※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

1. 구청장 :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
2. 구의원 :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